

—안전점검운영 및 결과조치에 관한 업무규정 요약—

본협회의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소방법 제6조 및 국무총리 훈령 제122호에 의한 안전점검결과처리의 신속적 정정을 기함으로서 화재 예방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화보 및 화보의 안전점검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번 훈령의 제정으로 협회 업무의 변경내용상 부가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안전점검기준은 1980. 6. 30 77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안전점검의 계획수립 및 통보(년도별, 반기별)—매년 12.15 77지 연간 계획을 수립,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반기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관서에 통보한다. 이것은 협회의 점검과 소방관서의 점검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안전점검 불응 건물에 대한 합동점검—원칙적으로 소방서에서 대행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당협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4) 안전점검결과를 소방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현행은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만 통보(소방서에서 구청통보)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서 및 구청에까지 직접 통보할.

(5) 점검의 제한

(가) 확인점검의 제한—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확인점검을 실시하지 못한다.

(나) 반기별 계획에 미포함된 점검대상을 점검하고자 할 때는 일주일 전에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1980. 7. 1 부터 시행한다.